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5. 9 선고 2022나3324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기술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

담당변호사 안형윤

피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A

변 론 종 결 2023. 4. 11.

판 결 선 고 2023. 5. 9.

제1 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2. 11. 선고 2020가단145895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별지1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17. 12. 15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,646,5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별지1 목록 기재 제4항 내지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17. 12. 19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채권 중 7,001,667원의

배당금지청구권을 양도하고, 대한민국(소관 :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)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하였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사자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- 제1심판결 제2면 아래로부터 제4행 중 “연정)로”를 “연장)로”로 고쳐 쓴다.
- 제1심판결 제3면 아래로부터 제3행 중 “지분(별지 목록)”을 “지분(별지1 목록)”으로 고쳐 쓴다.
- 제1심판결 제4면 제3, 6, 8, 11행의 각 “별지”를 “별지1”로 모두 고쳐 쓴다.○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의 “별지”를 “별지1”로 고쳐 쓴다.
- 제1심판결 제6, 7면의 표 중 부동산 란에 기재된 각 “별지”를 “별지1”로 모두 고쳐 쓴다.
- 제1심판결 제8면 제7, 18행 중 각 “별지”를 “별지1”로 모두 고쳐 쓰고, 제15 내지 18행 중 “피고가 경매나 공매 ~ 이전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”를 삭제한다.
- 제1심판결 제10면 제3, 5, 12행 중 각 “별지”를 “별지1”로 모두 고쳐 쓰고, 제6행의 “지급하였는바,”를 “지급하였는데, 그 매매대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인중개사의 중개가 없었다거나 매매대금이 지급되기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것만으로는”으로 고쳐 쓰며, 제11행의 “보이는 점” 다음에 “⑤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시가의 1/3정도의 염가로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,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매수 후 약 2년 뒤에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별지1 목록 제1항

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3,646,588원을, 같은 목록 제4항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7,001,667원을 각 배당받은 것에 불과한 점, 경매투자의 경우 낙찰 받은 원가에도 못 미쳐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4~5개월 전 낙찰 받은 원가 상당액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을 부당하게 염가에 매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”을 추가한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형석, 판사 황기선, 판사 이상윤

[별지1]

부동산의 표시

1. 경기도 양평군 일야 550㎡
(공유자지분 2076분의 220 주식회사 지분 전부)
2. 경기도 양평군 일야 550㎡
(공유자지분 2076분의 220 주식회사 지분 전부)
3. 경기도 양평군 일야 630㎡
(공유자지분 2076분의 220 주식회사 지분 전부)
4. 충청남도 서산시 일야 2288㎡
(공유자지분 82380분의 1968 주식회사 지분 전부)
5. 충청남도 서산시 일야 3305㎡
(공유자지분 82380분의 1968 주식회사 지분 전부)
6. 충청남도 서산시 일야 3305㎡
(공유자지분 82380분의 1968 주식회사 지분 전부)
7. 충청남도 서산시 일야 552㎡
(공유자지분 82380분의 1968 주식회사 지분 전부)

8. 충청남도 서산시 일야 549㎡
(공유자지분 82380분의 1968 주식회사 지분 전부)
9. 충청남도 서산시 일야 552㎡
(공유자지분 82380분의 1968 주식회사 지분 전부)
10. 충청남도 서산시 일야 1653㎡
(공유자지분 82380분의 1968 주식회사 지분 전부)
11. 충청남도 서산시 일야 1653㎡
(공유자지분 82380분의 1968 주식회사 지분 전부)
12. 충청남도 서산시 일야 4297㎡
(공유자지분 82380분의 1968 주식회사 지분 전부). 끝.

[별지2]

채권의 표시

별지 기재 제4항 내지 제12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
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기하여,
피고가 대한민국(소관: 대전지방법원원 서산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
원)으로부터 지급받을 배당금 7,876,876원의 배당금지급청구채권. 끝.

